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2
- 다. 상정일자 : '97. 2. 25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송기채
- 나. 제정이유
 -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예탁관리 및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결산 및 보고를 위해 제정하였음.
- 다.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조성·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또는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키 위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안은 개정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동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부. 끝.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97 - 9
----------	--------

제출년월일 : 1997. 2. 4.

제 출 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1995. 12. 6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안 2 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 기금의 운용수입
- 기타 잡수입등

○ 기금의 운용관리 (안 3 조)

- 조성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예탁
- 잔여분은 당해년도 재해예방사업비 및 재해응급복구비등에 충당

○ 기금의 회계관리 (안 5 조)

-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 3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기금분임운용관 : 건설과장
3. 기금출납원 : 방재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